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(2005. 2. 2)

1. 심사 경과

가. 2004. 12. 14 : 사천시장제출

나. 2005. 1. 26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72호)

다. 2005. 2. 2: 제93회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(정보담당관 정대성)

가. 제안 이유

○ 지역정보화촉진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총괄 부서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위촉규정 변경
 - 유관기관·민간단체·학계·언론계·산업체의 장, 교수·교사·연구원, 시의회의원, 업무관련 국·담당관·과장
 - ⇒ 시의회의원, 유관기관·교육계·언론계·산업체의 임직원, 민간인, 소속공무원
- 2) 협의회 간사 지정규정 변경
 - 정보화를 총괄하는 전산부서의 장 ⇒ 정보화촉진업무담당주사

- 3) 관련법령 명칭 변경
 -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
 - ⇒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 - 4) 기타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 등의 정비
 - 용어의 정의 본문규정 신설
 - 시장 ⇒ 사천시장
 - 시·도 ⇒ 경상남도
 - 참석위원 실비변상 및 시행규칙 조항

다. 관계 법령

○ 정보화촉진기본법.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지역정보화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서
- 개정되는 주요 내용 중
 - 제1조의 "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"을 "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"로 개정하는 것은, "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 에관한법률"이 2001. 1.16(법률 제6360호) "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"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서 관련법령 인용을 바르 게 개정하는 것이며

-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"시장" 과 "시·도"를 "사천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 "과 "경상남도" 로 하는 것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임
- 제10조제2항 협의회위원의 위촉대상자를 "유관기관·단체·학계·언론계· 산업체의 장"에서 "유관기관·교육계·언론계·산업체의 임직원"으로 개정 하는 것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 고, 정보화 총괄부서장도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는 정예자원이 위촉 또는 임명되도록 하는 것이며, 제4항의 협의회 간사를 정보화촉진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제14조의 개정은 위원수당지급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임
-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운영상 나타난 문 제점을 개선·보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
- 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- 5. 토론 요지 : 없음
- 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- 7. 소수 의견 : 없음